2022학년도 제1차

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일 시		2022. 3. 17(목) 11:00
장 소		본관 2층 대회의실
참석 현황	참석의원	김홍철, 이규남, 김교근, 오병우, 정현화, 석동규, 김진홍, 오권영
	불참의원	김영학, 김종우, 이민희
안건	심의사항	학칙 개정(안)
	자문사항	
	기타사항	
안건설명자		기획예산팀장
기타참가자		

회 의 내 용

[개회선언]

· 의장이 성원을 확인하고 개회 선언

· 의 장 : 금일 회의 안건에 대해 설명 : 학칙 개정(안) 심의

[학칙 개정(안) 심의]

· 의 장 : 기획예산팀장에게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설명을 요청

· 기획예산팀장 : 인권센터 신설 등 학칙 개정(안)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

- 인권센터 설치 근거 : 고등교육법 제19조의3(인권센터)

「고등교육법」 신설 조문 내용
제19조의3(인권센터) ① 학교는 교직원,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·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<u>인권센터를 설치·운영</u>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,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.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. 성희롱·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4.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

서 명		

회 의 내 용

· 정현화 의원 : 인권센터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향후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 요청
· 기획예산팀장 : 이미 20일 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고,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임을 설명
· 이규남 의원 : 인권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정의 필요성을 언급
· 기획예산팀장 : 현재 '인권센터 운영규정' 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으며, 학칙 개정 이후 규정 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
· 석동규 의원 : 생활관 소속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질의
· 기획예산팀장 : 생활관은 대학본부 소속으로 변경될 것임을 설명
· 오병우 의원 : 인권센터 설치는 여러 방면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언급
· 의 장 : 인권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교내 구성원들의 폭넓은 인권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및 직원들의 인권이 모두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
· 의 장 : 전체의원들에게 추가로 다른 의견이 없는지를 확인
· 전체의원 : 다른 의견이 없고, 원안 의결에 동의
· 의 장 :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원안 의결을 선언

[폐회선언]
· 의 장 : 의장이 금일 안건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폐회 선언

서 명	이규남	정 현 화

참석의원 서명

구 분	소 속		성 명	서 명
대학발전 평의원	청암·석정선생 기념사업회	회 장	김홍철	
교수평의원	지적학전공	교 수	김영학	
	토목환경공학전공	교 수	김교근	
	공예디자인전공	교 수	이규남	
직원평의원	사무처 시설운영팀	참 사	이민희	
	사무처 구매관리팀	부 참 사	오병우	
조교평의원	박물관	조교	김종우	
동문평의원	총동문회	운영부회장	정현화	
대학발전 평의원	법무법인 주성	대표변호사	석동규	
	천리향	대 표	김진홍	
학생평의원	총학생회	회 장	오권영	오권영

서 명		